

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인호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110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
발 의 자 : 김인호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박기재, 노승재, 경만선,
김춘례, 오한아, 황규복,
안광석, 송정빈, 이영실 의원
(9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, 인터넷 등에서 건강과 관련하여 많은 정보가 난무하고 있음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시민에 대하여 올바른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·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·관리한 통계와 정보를 토대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시민에 대하여 올바른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.(안 제29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진흥법」
「보건의료기본법」
「지역보건법」

「지방보건법」

「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사항 : 개정안 및 신·구 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·관리한 통계와 정보를 토대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시민에 대하여 올바른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9조(건강 통계 · 정보 관리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29조(건강 통계 · 정보 관리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 · 관리한 통계와 정보를 토대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 · 증진하기 위하여 시민에 대하여 올바른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</u></p>